

■ 소득세법 시행령 [별표 1] <개정 2026. 2. 27.>

농가부업규모 축산의 범위(제9조제1항제1호 관련)

가축별	규모
젖 소	50마리
소	50마리
돼 지	700마리
산 양	300마리
면 양	300마리
토 끼	5,000마리
닭	15,000마리
오 리	15,000마리
양 봉	100군
개	500마리

비고

1. 성축을 기준으로 한다. 다만, 육성우의 경우에는 2마리를 1마리로 본다.
2. 사육두수는 매월 말 현황에 의한 평균 두수로 한다.
3. 개의 경우에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정한다.